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7

제출일자 : 2026. 9. 28.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직무분야의 전문적 자문 기능 수행능력을 높이고자 위원의 인력자원(pool)을 늘리고 항번호가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1항 구성인원 증가 50명 이내 → 100명 이내

나. 안 제12조제4항 현행 제3항으로 항번호 오기부분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2)「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제1호

(3)「건축기본법」 제3조

(4)「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6. 8. 20. ~ 9. 9.)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12조 중 “③ 군수가”를 “④ 군수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로부터 자문 답변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자문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소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군수가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 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 · 공원 ·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 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8.>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

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달성군 공공건축 건립 및 조성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130,000원 × 10명 × 12회 = 15,600,000원
-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30,000원 × 100명 × 1회 = 13,000,000원
- 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 10,000원 × 10부 × 12회 = 1,200,000원
 10,000원 × 100부 × 1회 = 1,000,000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미래공간과 공간기획팀장	성 명 (연 락 처)	이 상 동 (☎ 3291)